

壬亂殉國 李英男將軍 碣狀類의 再構成的 考察

全浩秀*

- I. 머리말
- II. 생애 관련 기본 자료의 검토 및 재구성
- III. 請兵說 및 주요 관직 기록의 검토 및 재구성
- IV. 결론

I. 머리말

1592~1598년의 7년간에 걸친 壬辰倭亂은 朝鮮王祖 최대의 대외적 시련이었을 뿐만 아니라, 침략국이었던 日本과 조선에 원병을 파견한 明의 운명에도 하나의 결정적 계기를 이루었던 사건이다. 7년간 戰場을 이루었던 조선왕조는 인적·물적 측면에서 복구하기 쉽지 않은 피해를 입었고, 일본에서는 豊臣秀吉정권이 몰락하고 德川幕府가 들어섰으며, 중국에서는 明나라를 대신하여 淸朝가 中原을 장악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戰禍의 現場이었던 조선왕조에서 정권이 순조롭게 계승된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라 할 만하다.

한편 戰禍의 당사국이었던 조선왕조가 미증유의 국난이었던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동력으로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거론된다. 즉, 조선 수군의 역할, 의병의 봉기, 그리고 明의 구원병 지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조선 수군의 역할, 곧 忠武公 李舜臣將軍¹⁾의 활동은 전쟁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는 직접적인 배경으로 주목되었다. 즉, 1592년 8월의 平壤城 奪還戰鬪는 비록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전쟁 초반의 望風大潰의 劣勢, 즉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스스로 전투를 포기하였던 전황을 攻勢로 반전시키는 계기를 이룬 전투였다.²⁾ 그런데 이 전투의 토대로 일찍부터 李忠武公이 해전에서 연전연승을 통해 제해권 장악하고 湖南을 보전했던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제시되었던 것이다.³⁾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加里浦僉使 李英男將軍은 이충무공이 露梁海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을 때 동시 순국한 10여 명의 장수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오른 지휘관이다.⁴⁾ 또

*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연구원, 충북대학교 강사

1) 이하, 李忠武公으로 표기를 통일한다.
 2) 趙浚來, 「왜란의 발발과 경과」, 『한국사』 29, 국사편찬위원회, 1995, pp.35~36.
 3) 李重煥, 『擇里志』, 「八道總論 全羅道」; 李翼成 譯, 을유문화사, 1993, pp.78~80 참조.
 4) 『宣祖實錄』 권106, 31년 11월 27일 戊申, ‘左議政 李德馨의 馳啓’ 참조. 한편 노량해전의 전사자 중

한 임진왜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저술의 하나인 西厓 柳成龍의 『懲毖錄』에서는 이충무공이 경상우수사 元均의 請兵을 수락하여 연합 지원함대를 구성할 때, 그 請兵使節의 역할을 遂行했던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에서 가리포첨사 이영남장군은 임진왜란, 특히 海戰史를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의 하나로 자리 잡았던 듯하다. 특히, 請兵說은 『懲毖錄』이 조선과 일본 모두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대표적 기록물의 하나로 자리잡아감에 따라⁵⁾, 중요 사실의 하나로 회자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 청병설의 일반적 확산은 예상치 못했던 엉뚱한 사태를 낳기도 하였다. 다름 아니라, 사후의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병사절을 수행한 ‘復數의 李英男’이 등장하는 錯誤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즉, 同一事蹟의 이영남장군에 대해 별개의 두 인물로 추송사업이 추진되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착오는 이미 조선후기에 벌어진 사태였으나, 당시에는 상호간에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식되지는 못했던 듯하다. 그러던 것이 1960년대 全州지역에서 대규모의 현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착오의 문제를 상호간에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각자의 사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상당한 노력과 자료를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는 보다 심각해지는 양상으로 발전되었다.⁶⁾ 특히, 전주지역에서는 鎭川지역의 礪狀類,⁷⁾ 즉 墓碣銘·行狀·墓碑文 등에 대해 年代의 불일치를 근거로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⁸⁾

이렇듯 상호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加里浦僉使 李英男將軍에 대한 논의는 그 생애와 업적에 대한 소개에 앞서, 관련 기록 자체의 사실성 여부를 재검토하는 작업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로 간에 자기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와 내용에 대해 사실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생애·연보를 재구성하는 형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실제로 그간의 논쟁과정을 살펴보면 자료 자체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은 더욱 분명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름 아니라 상호간에 자기주장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들이 礪狀類 중심의 후대에 편찬된 2차 자료라는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갈장류도 해당 인물의 사적을 증

에서 후대에 이름이 밝혀진 인물은 30여 명이다(최두환, 『충무공 이순신의 생애』, 도서출판 宇石, 1999, p.412.).

5) 『징비록』은 1633년(인조 11)에 목판본으로 처음 간행되었으며, 1695년(숙종 21)에는 일본 교토에서도 발간되었다(박창기, 「《조선군기대전》의 임진왜란 다시 쓰기와 《징비록》」 『日本學報』 47, 한국일본학회, 2001, pp.506~507; 鄭淳台, 「國寶 제132호 懲毖錄」, 『月刊朝鮮』 3월호, 2003, p.337.

6) 이영남장군의 사후 현창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적으로는 莞島 忠武祠와 全州 宣忠祠를 들 수 있다. 한편 이 논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논저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① 崔碩男, 『忠將李英男事蹟記』, 가림출판사, 1967.

② 李相殷, 「壬亂殉節 李英男은 同名2人 上, 中, 下」, 『한국일보』, 한국일보사, 1972.

③ 李榮煥, 『李英男將軍傳記』, 진천문화원, 1984.

④ 李宗遠, 『侵牟된 正論—壬亂事蹟을 歪曲捏造한 陽城李英男行狀—』, 전의예안이씨 전라북도화수회 종사편찬위원회, 1993.

7) 조용헌, 「譜學 연구가 徐守鏞」 『新東亞』 8월호, 동아일보사, 2005, p.553 참조.

8) 이종원, 위 책 참조.

언하는 자료로서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때로는, 특히 후대에 편찬된 경우라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윤색과 착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종종 유명한 인물 가운데서도 생물연대가 未詳이라던가, 기본적인 사항조차 상반된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제 해소의 실마리는 의외로 복잡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다. 다름 아니라 지금까지의 논쟁과정을 통해볼 때 문제 해결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1차 자료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碣狀類 등 개별 인물의 傳記類 자료나 족보류 등 각종 문중 관련 자료는 국가 공인의 年代記의 正史類나 1차의 原資料 등을 통해 상호 교차적으로 관련 사적이 확인되지 못할 경우, 그 사실성을 주장하는 데는 상당히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조선후기의 상황은 더욱 좋지 않았던 듯하다.⁹⁾

물론 기왕의 상호간의 논쟁이 갈장류의 傳奇的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다. 王朝實錄 등의 正史類 年代記 자료라든가 각종 연구서도 나름대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진천지역에서 자기주장의 근거로 각종 邑誌類의 ‘先生案’·‘官案’ 등의 1차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 그중에서도 『加里浦鎭僉使先生案』의 발굴은 획기적인 성과로 주목해볼 만한 것이었다. 다름 아니라, 그 기재내용 중에서 ‘在鎭川’이라는 관련 地名이 확인됨에 따라¹⁰⁾ 객관성 확보의 결정적 근거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천지역에서도 문중 전승의 갈장류¹¹⁾의 사실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은 한계는 전주지역과 마찬가지로이다. 즉, 해당 인물의 갈장류가 사후 약 90년,¹²⁾ 150여년¹³⁾이 지난 후에야 정리되고 있음에도 착오나 윤색의 가능성에 대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문제점은 전문연구자가 아닌 이상, 불가피한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듯 논쟁의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차 자료의 발굴이 긴요한 만큼, 구체적인 논의과정에서는 우선적으로 이영남장군의 생애와 관련된 기본사항을 추출해볼 수 있는 當代의 原資料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먼저 이영남장군의 出仕 경로에 대해서는 모두 무과 급제자로 기록하고 있으므로,¹⁴⁾ 해당년도의 武科榜目的 존재 여부를 통해 그 사실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이미 발굴된 바 있는 『加里浦鎭僉使先生案』에 대해 자료비판과 현장조사를

9) 이와 관련해서는 茶山 丁若鏞의 「忠臣論」·「孝子論」 등이 참조된다(李翼成 譯, 『茶山論叢』, 을유문고, 1972, pp.111~127).

10) 이영환, 앞 책, 전면 화보 및 p.132 참조.

11) 진천지역의 이영남장군과 관련된 주요 갈장류 자료는 다음과 같다.

① 「贈嘉善大夫兵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行通政大夫長興府使兼助防將李公行狀」(南大有 撰, 영조 36).

② 「助防將公殉節」, 『陽城李氏名賢錄』 권2(양성이씨문중, 순조 9).

③ 「陽城李英男將軍顯忠碑文」(金萬熙 撰, 1960년).

12) 전주지역 이영남장군의 墓誌는 사후 87년이 되는 1684년(숙종 10) 당시 右議政이었던 族孫 李尙眞에 의해 찬술되었다.

13) 진천지역 이영남장군의 行狀은 사후 152년이 되는 1760년(영조 36) 進士 南大有에 의해 찬술되었다.

14) 전주지역에서는 선조 21년(1588, 戊子) 18세에, 진천지역에서는 선조 17년(1584, 甲申) 19세에 무과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병행하여 시도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임진왜란 군공포상 자료인 『宣武原從功臣錄券』을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조선왕조에서 관료유생의 등용문인 과거급제자의 인명부에 해당하는 榜目類 자료는 관련 당사자가 직접 제출한 身上資料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었다.¹⁵⁾ 따라서 고의적 위조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개인의 身元과 관련된 사실상 가장 신빙성을 갖춘 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리포침첩사선생안』은 이충무공과 동시 순국한 이영남장군의 마지막 관직이었던 역대 가리포침첩사의 명부라는 점에서, 어느 기록보다 신빙성이 풍부한 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在鎭川”이라는 地名과 관련된 논쟁은¹⁶⁾ 별도의 항목으로 다루어보 고자 한다.

마지막 일차 분석대상으로 『선무원종공신녹권』도 검토해보지 않을 수 없는 자료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영남장군이 이충무공과 동시 순국한 장수들 중에서 첫 번째로 이름이 올랐다면, 正功臣이 아닌 이상 原從功臣의 반열에는 올랐을 것임을 틀림없이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선무원종공신녹권』에는 1등 공신에 ‘折衝 李英男’이, 2등 공신으로 ‘司僕 李英南’의 두 인물이 등재된 것으로 이미 확인된 바 있다.¹⁷⁾

다음으로는 이영남장군과 관련된 대표적 행적의 하나로 알려진 ‘請兵說’의 사실성 문제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 ‘청병설’은 『징비록』의 명성과 함께 조선후기 官僚儒生들에게 하나의 일반적 사실로 회자되었던 듯하다. 그런데 정작 청병설의 또 다른 당사자의 한 사람인 이충무공의 진중기록인 『난중일기』등에는 이와 관련된 사실의 언급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 사실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기도 하였다.¹⁸⁾ 특히, 그 과정에서 請兵이라는 難題를 성사시킨 이영남장군의 직위가 종4 품직인 栗浦萬戶에서 오히려 종9품직인 所非浦權管으로¹⁹⁾ 사실상 좌천되고 있는 상황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갈장류에 기록된 각종 官職의 역임 여부에 대해 그 사실성 문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그간의 논쟁과정을 살펴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는데, 각종 문헌에 등장하는 이영남장군 관련 기록을 무비판적·무차별적으로 자기 조상의 사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기록 상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同名異人의 가능성조차도 거의 고려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앞서 언급했듯이, 『선무원종공신녹권』만 하더라도 이미 동시기에 동명이인의 존재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는 이영남장군의 年譜를 再構成하는 형식으로 결론은 맺고자 한다.

15) 조선시대 과거의 구체적인 운영과정과 관련해서는 ‘김경용, 『조선시대 과거제도 시행의 법규와 실제』, 『교육법학연구』 16-2호, 대한교육법학회, 2004가 참고 된다.

16) 이영환, 앞 책, 화보 부분 및 p.132 참조.

17) 이영환, 앞 책, p.146과 p.212 참조.

18) 이민웅, 『임진왜란 해전사』, 청어람미디어, 1998, pp.76~79 참조.

19) 이영환, 앞 책, p.62 참조.

II. 생애 관련 기본 자료의 검토 및 재구성

앞서 언급한대로, 이영남장군의 생애에 대해서는 두 지역에서 첩예한 대립이 진행 중인 만큼, 우선적으로 갈장류 자료의 기록을 관련 1차 자료를 통해 그 사실성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와 관련하여 몇 건의 1차 자료가 현전하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대로이다. 이들 1차 자료를 통해 이영남장군의 생애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은 나름대로 추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순국 당시의 재임지였던 가리포진의 첩사안이 이미 발굴된 바 있으며, 임진왜란의 戰功褒賞 관련 기본 자료의 하나인 『선무원종공신녹권』에서도 그 성명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의 조사과정에서 무과급제년도의 하나인 선조 17년(1584)의 방목자료인 『萬曆十二年甲申秋別試文武榜目』이 현재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소장중임을 새로이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²⁰⁾

자료의 분석은 먼저 생애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만력십이년갑신추별시문무방목』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왕조의 과거 진행절차 규정상 모든 응시자는 시험에 앞서 자기 신상 및 四祖, 즉 父·祖·曾祖·外祖의 명단을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심사받아야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계 및 신상 관련 기초 자료의 확보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리포진첩사선생안』에서는 부임 당시의 관품 및 재임기간 등의 일반적인 내용이외에, 특기 사항인 “在鎭川”과 관련된 논쟁과 의미를 규명해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인 『선무원종공신녹권』은 단지 職役과 姓名만이 등재되어 있는 단편적인 자료이지만, 그 등재 원칙이나 인물 구성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항들이 추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이제 위의 세 자료에 대해 『만력십이년갑신추별시문무방목』, 『가리포진첩사선생안』, 『선무원종공신녹권』의 차례대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1. 『萬曆十二年甲申秋別試文武榜目』을 통해 본 身上資料

이영남장군은 갈장류 자료에 따르면 모두 무과급제를 통해 관직에 오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생애 또는 신상 관련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할 경우, 해당 급제년도의 방목 자료의 존재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이 일차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대로, 이영남장군의 무과급제와 관련하여 현전하는 기록으로는 선조 17년(1584)의 무과방목이 현재 계명대학교 도서관에 소장중이라는 사실을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방목자료의 명칭은 『만력십이년갑신추별시문무방목』이다.²¹⁾

20) 소중한 자료의 열람 및 촬영에 도움을 주신 계명대학교 도서관 관계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1) 『萬曆十二年甲申秋別試文武榜目』,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본, 청구기호 349.16 문무만.

조선시대 인물 연구의 기본 자료로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목류 자료는 특히 과거시험 당시에 간행하는 單科榜目の 경우 원칙적으로 응시 당사자가 직접 제출한 身上資料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고의적 위조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가장 신빙성이 높은 자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재내용은 그대로 사실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해도 대체로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이 발굴된 『만력십이년갑신추별시문무방목』은 간행 당시의 원본이 아닌 필사본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단과방목을 그대로 轉寫한 자료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1차 자료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해당 자료의 표제 부 원문 사진을 제시해보면, 다음의 【도 ①】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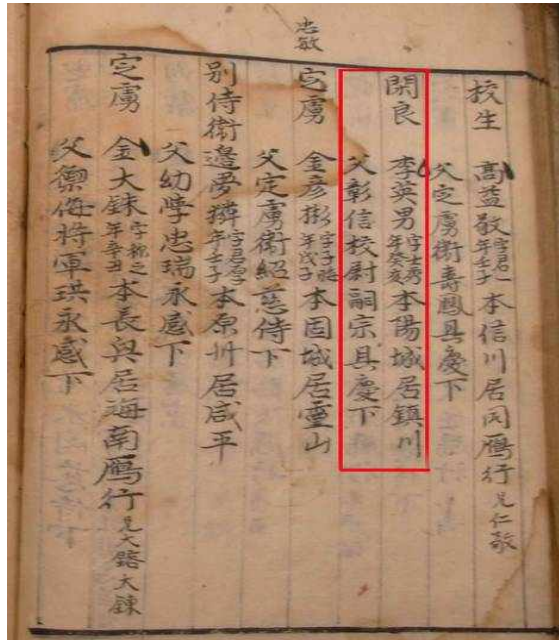
【도 ①】 『만력십이년갑신추별시문무방목』의 표제 부 원문 사진】

앞서 방목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영남장군이 무과에 급제한 선조 17년의 대과는 式年試가 아닌 別試로서, 몇 가지 특이사항이 논의될 수 있는 시험이었다. 우선 급제자의 명수에 있어서 문과 시험은 甲·乙·丙의 3科를 합쳐 모두 12人만을 선발한 반면, 무과의 경우는 갑·을·병의 3과에 걸쳐 도합 184명이나 대거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었다. 식년시의 규정대로라면 문과 33명, 무과 28명을 배출하는 것이 定例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별시에 해당하는 시험이었다고 할 만하다.

이 무과시험에서 이영남장군은 병과 第163位로 급제하였다. 급제의 순위만으로 본다면, 이후의 출사과정이 결코 쉽사리 보장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성적이었다. 먼저 이 방목에 기재된 이영남장군의 신상 및 가계 관련 사항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閑良 李英男 字士秀 年癸亥 本陽城 居鎮川 父彰信校尉嗣宗 具慶下

즉, 무과 응시 당시의 직역은 閑良이며, 字는 士秀, 출생년도는 癸亥年, 즉 명종 18년(1563)이었다. 또 본관은 陽城이고 거주지는 鎭川이며, 부친은 彰信校尉 嗣宗이다. 그리고 ‘具慶下’라는 용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무과 응시 당시 兩親이 모두 생존하고 있었다. 즉, ‘구경하’라는 용어는 부모의 구존 여부와 관련하여, ‘양친이 모두 살아계신 侍下’라는 의미이다. 참고로 위 사항의 관련 원문 부분을 제시해보면, 다음의 【도 ②】와 같다.



【도 ② : 『만력십이년갑신추별시문무방목』의 ‘閑良 李英男’ 부분 원문 사진】

한편, 위의 사항을 갈장류 자료와 비교해보면, 급제년도·자·본관·거주지·부친의 성명 등이 일치함이 확인된다. 특히, 그 거주지와 관련하여 “居鎭川”이라는 항목을 통해, 이영남장군의 출신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 그리고 무과 응시 당시의 직역이 ‘한량’이었다든가, 부친의 직역 등은 새로이 발굴된 사항에 해당된다. 그러나 출생년도 및 양친의 생존관련 사항에서는 갈장류와 일치되지 않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먼저 출생년도의 차이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갈장류 자료에서는 이영남의 출생 년도를 丙寅生, 즉 명종 21년(1566)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반면에 위 방목자료에 따르면 그의 출생년은 癸亥年, 즉 명종 18년으로 양자간에 3년의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의 생애 및 연보 자료는 이 기록에 따른다면 모두 3년을 덧붙여서 재구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무과 합격 당시의 나이는 갈장류 자료에 따르면 19세이지만, 위의 방목자료에 따라 3세를 상향 조정하여 22세로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년도와 관련된 이 같은 오차의 발생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의 역대 인물 중에는 뚜렷한 행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생몰연대조차 모르거나, 특히 출생년이 未詳인 경우는 적지 않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進士 南大有에 의해 행장이 찬술된 시기가 사후 150여년이 지난 ‘崇禎再庚辰’, 즉 영조 36년이였다

는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착오가 개입되었을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모와 관련된 사실의 오류는 결코 단순히 하나의 착오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방목 자료에서는 무과 합격 당시까지도 양친이 모두 생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갈장류 자료에서는 12세에 兩艱喪을 당하여 효성을 다해 3년간의 侍墓살이를 마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²²⁾ 아마도 忠·孝·節로 상징되는 유교적 윤리의식의 확산에 따른 후대의 윤색의 소산이 아닐까 생각해볼 수 있겠는데, 실제로 孝誠과 관련된 대표적 일화의 하나인 3년상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까지도 일반적 관행은 아니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듯 특기할만한 일화류의 전승과 관련하여 기록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결코 간단히 보아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과거급제의 연대착오와는 다른 특정 사실에 대한 착오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로써 갈장류 자료에 대해서는 사항에 따라 그 사실성의 취사선별도 불가피하다는 점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다고 하겠다.

2. 『加里浦鎭僉使先生案』의 작성 경위와 ‘在鎭川’의 해석 문제

『宣祖實錄』등의 정사류 자료에 따르면 이영남 장군이 1598년 露梁海戰에서 이충무공과 동시에 전사하였을 당시 그 직위는 加里浦鎭僉使이었다. 특히, 가리포진은 당시 古今島에 있던 統制營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鎭營이었다는 점에서, 사후의 현창과정에서 임진왜란 당시 이영남장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이 제기되었다.²³⁾ 따라서 그 역대 관장의 명부인 첨사안이 현전한다는 사실은 하나의 특기할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에서는 먼저 작성 경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뒤이어 앞서 언급한 대로 “在鎭川”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도록 하겠다.

① 『加里浦鎭僉使先生案』의 작성 경위와 자료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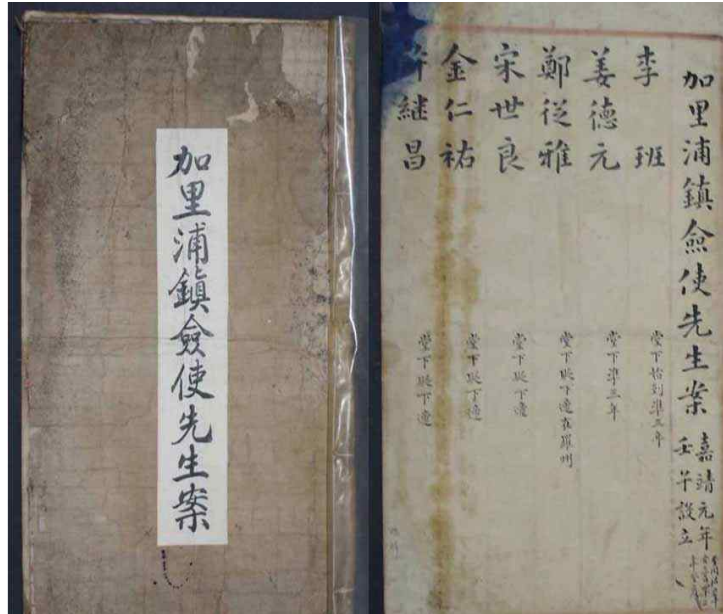
『가리포진첨사선생안』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말미에 수록된 발문을 통해 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先生案 또는 官案이란 해당 기관의 官長 또는 일정한 지위를 역임한 인물들의 재임기간을 수록한 일종의 人名簿로서, 어느 기관이 설립되면 그 초임자부터 명부를 작성하기 마련이다. 가리포진의 경우도 진영이 설치된 中宗 16년²⁴⁾의 다음해인 1522

22) 이영환, 앞 책, p.12.

23) 실제로 후대의 현창과정에서 고금도 충무사의 西廡에 이영남 장군이 배향되는 일차적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4) 『莞島郡誌』, 완도군지편찬위원회, 1992, p.242.

년부터 초대 첨사 李珪을 시작으로 명부가 작성되고 있다. 즉, 다음의 【도 ③】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 표제부에 ‘嘉靖元年 壬午設立’이라고 표기하여 가정 원년, 즉 중종 17년(1522)부터 명부가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도 ③ : 『加里포진첨사선생안』의 표제부 원문 사진】

다시 말해, 『加里포진첨사선생안』은 중종 16년(1521)加里포진이 설치된 이듬해부터 1895년加里포진이 廢鎮될 때까지 374년 227대에 걸친²⁶⁾加里포진 첨사의 명단을 수록한 인명부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렇듯 장기간에 걸친 인명부에 해당하는 만큼, 그 명단이 한 시점에 작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못되었다. 실제로 현재의 첨사 선생안은 2번 정도의 重修 내지 復設을 거친 것이 확인된다.

현재의 『加里포진첨사선생안』이 마련된 것은 경종 3년(1723)으로, 당시 전라병사 趙儻의 주도하여 重修案으로 작성되었다. 이때 전라병사 조빈이 『加里포진첨사선생안』의 중수를 주도한 배경에 대해서는 그 말미의 발문에 자세히 밝혀놓고 있다. 먼저 해당 원문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加里浦수군첨절제사진을 莞島에 설치하였는데, 이 섬은 康津의 領海에 속한다. 蓮營(전라우수영-필자 주)²⁷⁾이 그 서쪽에 있고, 탐라(제주)가 그 남쪽에 있다. 왼쪽으로 薪智島鎮을, 오른쪽으로는 古今島鎮을 공제하는 형국으로 하나의 雄鎮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재주와 명망이 있는 자로 엄선하여 專闕之階로 삼았다. 효종 초에 祖父로 뒷날 통어사를 지낸 膺是公이 복명하였다가 신묘년에 체임되었으며, 숙종 갑자년에는 통어사공의 사위로 뒷날 통제사를 지낸 金重元이 이어서 부임하였다. 그리고 今上(경종) 2년인 임인년에 不肖孫인 儻이 先麻를 이어받아 외람되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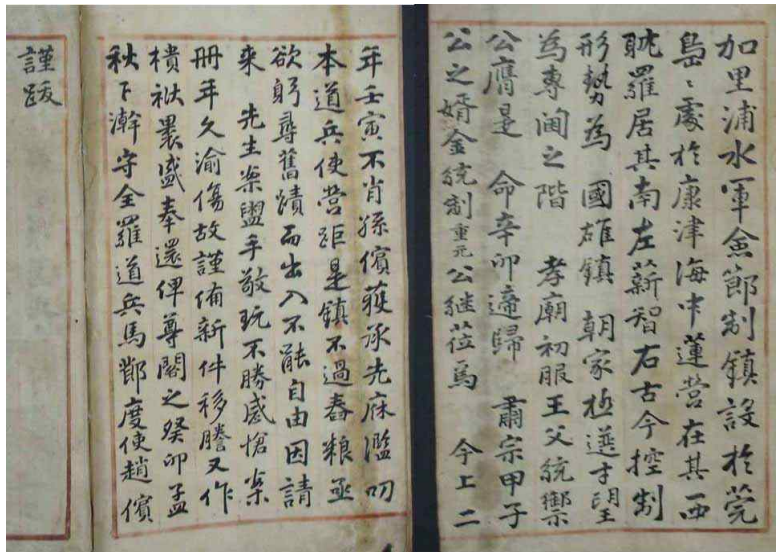
25) 『加里포진첨사선생안』은 현재 완도군의 관계당국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

26) 『완도군지』, 완도군지편찬위원회, 1992, p.244.

27) 『寒暄筭錄』권1, 「營鎮類」, “蓮營 全羅右水營.”

본도의 병사로 부임하였다. 병영과 이 鎭의 거리는 春糧에 불과하여 서둘러 직접 선조들의 옛 자취를 찾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來訪의 요청이 있었다. (이에 방문하여) 선생안을 손을 씻고 공손히 살펴보노라니, 비통한 심경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선생안은 오래되어 틀어지고 헤어진 상태였다. 이에 정성들여 新件을 제작하여 옮겨 적었다. 또 靑를 만들고 보자기로 쌓아 성대하게 봉환하여 누각에 보존하도록 하였다. 계묘년 7월 하순에 전라도병마절도사 조빈은 삼가 발문을 적는다(加里浦水軍僉節制鎭 設於莞島 島處於康津海中 蓮營在其西 耽羅居其南 左薪智右古今 控制形勢 爲國雄鎮 朝家極選才望 爲專闔之階孝廟初 服王父統禦使公膺是 命辛卯遞歸 肅宗甲子 公之婿 金統制重元公繼莅焉 今上二年壬寅 不肖孫儻 獲承先麻 濫切本道兵使 營距是鎭 不過春糧 亟欲躬尋舊蹟 而出入不能自由 因請來 先生案盥手敬玩 不勝感愴 案冊年久渝傷 故謹備新件移騰 又作楨褱裏盛奉還 俾尊閣之 癸卯孟秋下澣 守全羅道兵馬節度使 趙儻 謹跋).

참고로 위의 자료의 원문 사진을 제시해보면, 다음의 【도 ④】와 같다.



【도 ④】: 『가리포진첩사선생안』의 발문부분 원문 사진】

즉, 1722년(경종 2, 壬寅) 전라병사로 부임한 趙儻은 바로 인근의 수군 진영의 하나인 가리포진과 관련하여 자신의 祖父(王父)로 통어사를 지낸 趙膺是와 고모부로 통제사를 지낸 金重元이 각각 효종대와 숙종대에 가리포첩사로 근무한 舊緣이 있었다.²⁸⁾ 이에 전라병사로 부임함에 따라 조상들의 옛 자취를 찾아보고자 서둘러 가리포진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던 중 이듬해인 1723년 7월에야 가리포진을 방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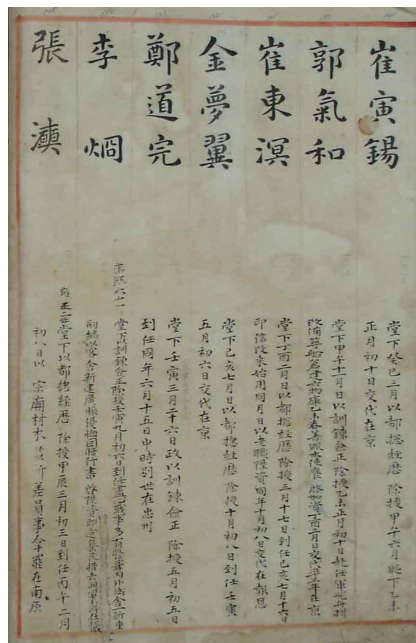
평소 기대해마지 않았던 방문이었던 만큼 조빈은 감회에 젖어 조상들의 옛 자취를 둘러보았으나, 기대와는 반대로 낡고 퇴락한 선생안을 받아보았을 때는 비통한 심정마저 억누를 수가 없었다. 이에 선생안을 다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한편, 스스로 跋文도 찬술하여 기념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가리포진첩사선생안』은 1804년에 다시 한 차례 復設이 이

28) 조응시(趙猷)와 김종원은 각각 제84대와 제103대 가리포첩사를 역임하였다.

루어지는데,²⁹⁾ 이때의 중수는 기재방식의 차이로써 新件의 제작된 아니었다.

선생안 또는 관안은 어찌 보면 하나의 인명부에 불과하지만 名分을 앞세웠던 조선왕조 사회에서는 하나의 특권적 상징이었으므로, 그 작성 방식에도 일정한 원칙이 적용되기 마련이었다. 기본적으로는 그 재임기간과 이임사유를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군현에 따라서는 부임시의 관품이나 직책 또는 거주지 등을 사항을 추가로 기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리포진첨사선생안』의 경우 그 작성 원칙 또는 관행은 1723년 전라병사 조빈이 새로이 첨사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적용한 방식을 대체로 준수되었다. 그 기재 방식은 다음의 【도 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도 ⑤】 『가리포진첨사안』중수 당시 현직 李炯僉使 부분의 모습

당시 조빈이 첨사안의 작성에 적용한 내용은 먼저 관품의 堂上官과 堂下官 여부를 구분하고, 이어서 도입일자, 이임사유 및 이임일자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그 말미에 ‘在○○’의 형식으로 해당 첨사와 관련된 地名을 기재하고 있었다. 한편 이러한 작성 방식은 1708년에 도입한 제116대 金錫保첨사부터 ‘以○○’의 형식으로 官職도 기재내용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작성 원칙이 확립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723년 전라병사 조빈에 의해 마련된 선생안의 작성 원칙이 해체되기 시작하는 것은 1869년(고종 6) 제199대 첨사로 부임하는 李鼎鎬첨사부터이다. 이후부터는 부임 이전의 관품이라든가 관직 등에 대한 기록과 관련 지명 등의 항목이 더 이상 기재되지 않는다. 그 이전에 부분적으로 字나 본관 등을 부기하던 관행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있는데, 그만큼 官紀 또는 士氣의 해이를 반영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29) 『加里浦鎮僉使先生案』, “甲子十月日 因巡營狀聞履歷 復設.”

그러나 제199대 이정호첨사 이전까지는 대체로 본래의 기재 원칙이 준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1807년 제173대 첨사로 부임하는 崔秉教첨사부터는 字나 본관 등도 새로이 첨가하고 있다. 이렇듯 『가리포진첨사선생안』에서는 대체로 1723년 전라병사 조빈에 의해 시작된 작성 원칙이 조선왕조 말까지 특별한 변동 없이 준수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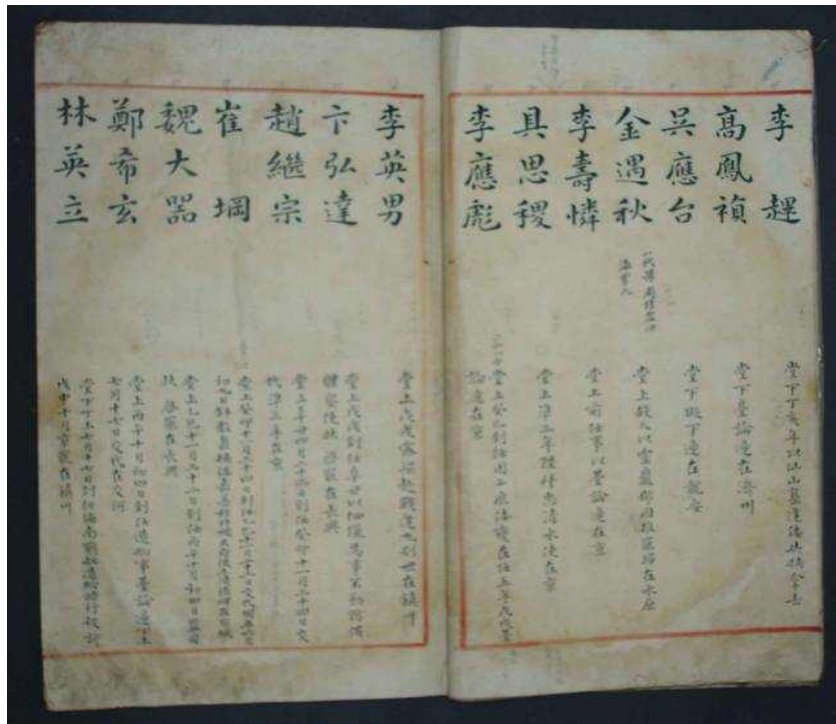
특히, 조빈이 가리포진을 방문하였을 때 첨사로 있던 제124대 李炯에 이르기까지는 그 필체에 있어서도 발문과 동일한 楷行體로 작성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해볼 수 있다. 즉, 당시 조빈은 이형의 경우 현직 첨사였으므로 이름만 기재하고 도입일자 등은 空欄으로 남겨놓았는데, 이후의 첨사와는 그 필체의 차이를 앞서 제시한 【도 ⑤】에서 보듯이 뚜렷이 구분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 필체는 다음의 【도 ④】: 『가리포진첨사선생안』의 발문부분 원문 사진】과 비교해볼 때, 동일 인물의 필체임도 어렵지 않게 확인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볼 때 현재 완도군의 관계 당국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가리포진첨사선생안』은 原資料, 즉 1차 자료로서의 사실성은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선생안의 設案, 重修 등과 관련된 사적이 뚜렷이 남아 있으며, 기재 원칙에 있어서도 1723년 전라 병사 조빈이 시작한 규정이 대체로 준수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그만큼 자료의 작성이 일관적이며 안정적으로 기술되어 온 사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723년 선생안을 중수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서체인 楷行體는 본문과 발문의 筆跡이 동일인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② ‘在鎭川’의 해석 문제

앞서 언급한대로 기왕의 논쟁과정에서 『가리포진첨사선생안』의 발문은 획기적이라 할만한 성과의 하나였다. 다름 아니라 각 첨사의 身上資料와 관련된 항목의 대부분에서 끝부분에 ‘在○○’의 형식으로 關聯 地名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객관성 확보의 하나의 결정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영남장군의 경우에도 그 신상 항목의 말미에서 “在鎭川”이라는 구절이 발굴됨에 따라, 진천지역에서는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의 하나로 활용되었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해당 자료의 원문 사진을 제시해보면, 아래 【도 ⑥】과 같다.



【도 ⑥ : 『가리포진첨사선생안』의 이영남장군 관련 부분 자료 원문】

위의 【도⑥】에서 이영남장군의 관련 사항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李英男 堂上 戊戌 露梁赴戰 逢丸別世 在鎭川

즉, 이영남장군의 첨사 재직 당시의 관품이 이미 당상관에 이르렀으며, 무술년, 즉 1598년 노량해전에 참전하였다가 적탄에 맞아 별세하였다. 진천에 묘소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위의 내용은 당시 좌의정 이덕형이 노량해전의 상황에 대해 조정에 보고한 내용으로도 뒷받침된다는 점에서 진천지역에서 자기주장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자료의 하나로 받아들여졌다.³⁰⁾ 이에 따라 이 ‘재○○’ 형식의 관련 지명의 표기에 대해서 전주지역에서는 과연 ‘묘소의 소재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제기하였다.³¹⁾ 따라서 이 문제는 별도로 다뤄볼 필요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가리포진첨사선생안』에서 해당 첨사의 관련 지명을 표기된 기간을 살펴보면, 그 시작은 제3대 첨사 鄭從雅부터 제198대 첨사 金春根까지 이다. 그런데 제3대 첨사 정종아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지명 표기가 지속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은 제50대 첨사 高鳳禎부터 이다. 따라서 그 실질적인 기간은 고봉정첨사가 부임한 1587년부터 김춘근첨사가 순직한 1859년까지 270여 년간이라고 할 수 있다.

위 270여 년의 기간 동안 해당 첨사에 대한 관련 지명의 표기는 대체로 ‘재○○’의 형식이

30) 이상은, 앞 글 中篇 참조.

31) 이종원, 앞 책, pp.136~137.

준용되었다. 그러나 모두 지명 표기가 ‘재○○’의 형식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으며, ‘居○○’의 방식도 몇 차례 사용되었다. 즉, 1810년에 부임한 제174대 金敬身첨사부터 ‘거○○’ 형식의 지명표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여, 1830년에 이임하는 제184대 첨사 李台成에 이르기까지 20년간 8명에게 적용하고 있다.³²⁾

조선시대 선생안 및 방목류 자료 등에서 ‘거○○’ 형식의 지명 표기는 대체로 生前의 居住地를 표기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이는 앞서 인용한 바 있는 『만력십이년갑신추별시문무방목』에서도 각 급제자의 신상 관련 표기에서 출신지 또는 거주지에 대해서는 ‘거○○’의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가리포진첨사선생안』에서도 ‘거○○’ 형식의 지명도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거주지 또는 출신지를 표기한 것으로 보아도 별반 무리는 없을 것 같다. 특히, ‘거○○’ 형식의 지명 표기가 20년간의 단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 해당 첨사의 殉職 기록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해석은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재○○’ 형식의 지명 표기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우선 이 내용이 하나의 기재 항목으로 정착된 시점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해볼 수 있는 사실은 『가리포진첨사선생안』에서 선생안 또는 관안의 기재 내용의 일반 형식이 나름대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임진왜란 종결 직후 부임하는 제57대 첨사 卞弘達부터 라는 점이다. 즉, 임진왜란 이전의 첨사들은 그 기재 내용이 상당히 빈약한데 당상관인가 당하관인가의 여부와 교체 사유가 동일 항목으로 기재되고, 확인인 가능한 경우 관련 지명을 부가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사정은 아마도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선생안이라 하더라도 그 명단 정도만이 전해오는 수준이었고, 나름대로 기재방식이 정착되는 것은 士林文化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임진왜란 이후의 사정과 연관된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런 측면에서 1723년 전라병사 조빈이 첨사안을 중수할 당시에는 확인이 가능한 내용은 최대한 반영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재○○’의 형식으로 해당 첨사의 緣故 地名을 표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첨사안이 중수되는 시점과 임진왜란의 시간적 격차를 고려한다면, 그 관련 지명은 ‘묘소의 소재지’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듯하다.

다만, ‘재○○’에서 관련 지명의 의미를 묘소의 소재지만으로 한정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만은 아니다. 즉, 1723년 전라병사 조빈이 첨사안을 중수하는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적 격차를 갖는 첨사들의 경우는 그러한 해석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당대에 생존이 확실시되는 첨사안 중수 직전의 첨사들에 대해서도 ‘재○○’의 형식으로 관련 지명을 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첨사안 중수 당시의 제124대 李炯첨사 직전의 첨사들에 대해서도 ‘재○○’의 형식으로 관련 지명을 표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들의 이임 사유를 보면 제123대 첨사 鄭道

32) 사실 처음으로 ‘居○○’ 방식의 지명 표기가 등장하는 것은 제171대 첨사 洪櫛의 경우이다. 그러나 홍간은 재직 중 별세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 착오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되어 일단 제외하였다.

完이 別世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임기만료 또는 交代거나 加資 또는 老職陞資 등이어서 재직 당시에는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병사 조빈은 ‘거○○’의 형식 등 다양한 표기를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재○○’의 형식으로 관련 지명을 표기하고 있는 것은 관행을 따른 조치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전라병사 조빈이 ‘재○○’의 형식의 그대로 준용한 까닭은 무엇일까. 그런데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배경도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가리포첨사의 지위는 무관직으로서 결코 낮은 관직이 아니었다. 즉, 가리포첨사의 지위에 오른 무관들은 중앙의 내직으로 옮기거나 수사 또는 병사로 승진하지 못하는 한 대체로 마지막 관직으로 임명되는 경우였다고 생각된다.³³⁾

다시 말해, 첨사직에서 이임할 경우 대부분은 자신의 出身地나 緣故地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였다고 판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관련 지명의 표기도 현재의 주거지만을 표시하는 ‘거○○’의 형식보다는, 귀향 또는 낙향의 의미를 포함하여 ‘在○○’의 방식을 채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가리포진첨사선생안』에서 관련 지명의 표기방식으로 활용된 ‘재○○’ 방식의 지명들은 선생안의 기재 항목이나 중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대체로 墓所의 소재지를 표기한 것으로 보아 별반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첨사의 출신지나 연고지 등을 기록한 것으로 해석하는 볼 수도 있겠다.

3. 宣武原從一等功臣 ‘折衝 李英男’과 ‘加里浦僉使 李英男’의 동일 인물 여부

노량해전에서 순국한 가리포첨사 이영남장군은 앞의 두 자료, 즉 『만력십이년갑신추별시 문무방목』과 『가리포진첨사선생안』에 근거할 때, 일단 진천지역의 논의가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특히, 『가리포진첨사선생안』에서 ‘在○○’의 형식으로 기재된 지명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別世”라는 표기와 더불어 사용된 경우라면 ‘墓所의 소재지’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선무원종공신녹권』의 자료적 가치는 이러한 해석을 결론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임진왜란의 극복과 관련하여 戰功으로 녹훈된 공신의 명칭은 宣武功臣이다. 그런데 이영남장군은 노량해전에서 이충무공과 동시 순국한 10여명의 장수들 가운데 첫 번째로 이름이 오른 휘하 장수였다. 따라서 그에 합당한 포상이 이루어졌을 것이고, 오늘날 그 근거는 공신녹권을 통해 확인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 종전에 따른 戰功褒賞의 과정에서 이영남장군은 선무공신의 正功臣으로 녹훈되지는 못했다. 따라서 原從功臣으로 녹훈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로도 이영남장군의 훈격은 선무원종1등공신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선무원종공신녹권』에서 이영남이란 이름으로 녹훈된 인물을 살펴보면, 원종1등공신으로 ‘折衝 李英男’과 원종2등공신인 ‘司

33) 상대적으로 재직 중에 사망하는 인물이 적지 않았던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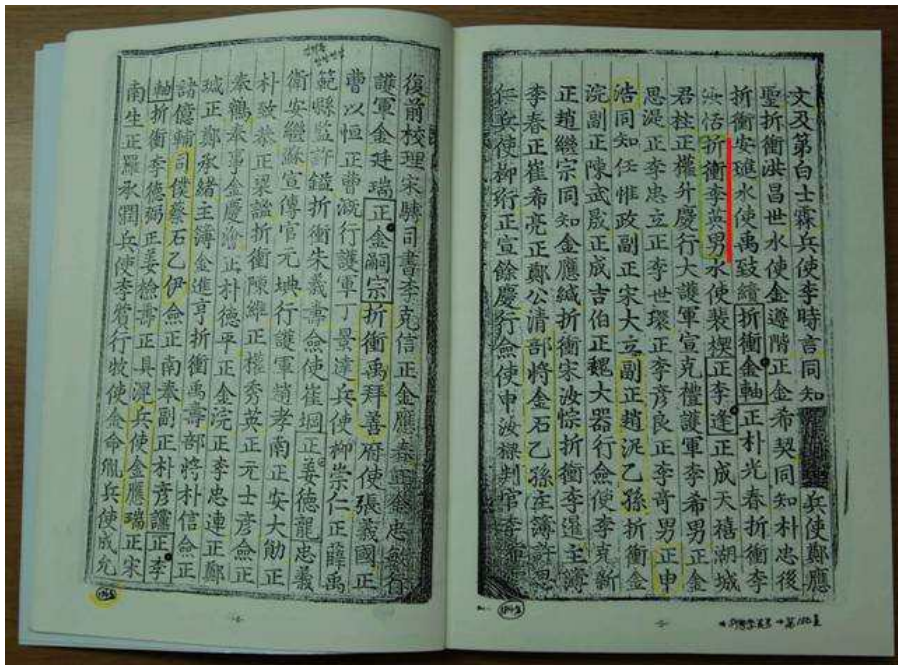
僕 李英男'의 2명의 인물이 확인된다. '절충 이영남'에서 '折衝'이란 무관의 최고 관품으로서 '정3품의 折衝將軍'을 가리키는 것이며, '사복 이영남'에서 '사복'이란 '兼司僕'³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품계는 정9품~정3품에 이르는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가리포침사선생안』에서 가리포침사 이영남의 관품은 '堂上官'으로 기재되고 있음을 확인해보았다. 즉, 가리포침사는 본래 종3품의 당하관 무관직에 해당하지만, 이영남은 당상관을 지위로서 行職으로 가리포침사에 임명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사실을 고려할 때 『선무원종공신녹권』에 기재된 원종1등공신 '절충 이영남'은 가리포침사 이영남과 우선 품계 상으로 동일 인물의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관으로서 당상관에 해당하는 품계가 바로 절충장군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품관 상으로만 본다면 '사복 이영남'의 경우도 가리포침사 이영남과 대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대로 사복, 즉 겸사복에 해당하는 품계는 정9품~정3품에 이르는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충 이영남'과 '사복 이영남'의 두 녹훈자 중에서 어느 누가 '가리포침사 이영남'에 해당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특히 그 기재 사항이 직역과 성명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또 다른 설명 방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무원종공신녹권』에서 두 녹훈자와 같은 훈격으로 녹훈된 주변의 인물들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대체로 대등한 전공을 세운 인물들은 동일한 훈격으로 녹훈되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원종1등공신인 '절충 이영남'과 더불어 녹훈된 주변 인물의 면면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도 ⑦】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34) 겸사복(兼司僕)은 조선시대 정삼품야문(正三品衙門)으로 왕의 신변보호를 위한 시립(侍立)·배종(陪從)·의장(儀仗) 및 왕궁 호위를 위한 입직(立直)·수문(守門)과 부방(赴防)·포도(捕盜)·포호(捕虎)·어마(御馬) 점검과 사육·조습(調習)·무비(武備) 및 친병(親兵) 양성 등의 의무를 맡은 기병(騎兵) 중심의 정예 친위병이었다. 1409년(태종 9)에 처음으로 성립되었고, 1464년(세조 10)에 정비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1754년(영조 30)에 용호영(龍虎營)으로 통합되었다가, 고종 때는 겸사복청(兼司僕廳)이라 하였다. 관원으로 겸사복장(兼司僕將: 從二品, 타관 겸직) 3원, 겸사복(兼司僕: 正九品~正三品) 50원, 내승(內乘: 從九品~正三品, 타관 겸직) 3원, 녹사(錄事) 2명, 서리(書吏) 1명 등 총 59명으로 구성되었다.



【도 ⑦】 : 『선무원종공신녹권』 ‘절충 이영남’ 부분 자료 원문

위의 【도 ⑦】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종 1등공신 ‘절충 이영남’과 같은 훈격으로 책훈된 앞뒤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임진왜란 당시 전라병사로 후에 4대 통제사를 지낸 李時言, 병사 정응성, 절충 홍창세, 절충 안진, 임진왜란 당시 영등포만호로 뒤에 통제사를 역임하는 충청 수사 禹致績 등이 있고, 또 임진왜란 당시 진주목사·경사우수사로 활약한 裴楔 등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주목해볼 수 있는 인물로 ‘절충 이영남’의 바로 직전에 녹훈된 ‘折衝 李汝恬’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여념은 임진왜란 당시 사랑만호·가덕첨사로 이영남과 더불어 이충무공을 자주 찾았던 同榜及第者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선무원종1등공신 ‘절충 이영남’과 같은 훈격으로 책훈되어 앞서거나 뒤서거나 기재된 인물들은 임진왜란 당시 전라도·경상도 등을 중심으로 활약한 主鎮·巨鎮의 지휘자급 장수들이거나, 통제사 이순신 또는 원균의 휘하에서 활약한 정규 수군의 지휘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일단 선무원종1등공신 ‘절충 이영남’이 ‘가리포첨사 이영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별반 무리가 없지 않을까 판단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그 면면에 ‘折衝’의 관품으로 표기된 인물들도 적지 않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선조실록』의 다음의 기사가 참고 될 만하다.

舜臣의 부하 중에는 당상관에 오른 자가 많은데…(중략). 元均의 부하 중에 禹致績이나 李雲龍 같은 자는 그 전공이 매우 많은 데도, 그에 대한 상은 도리어 다른 사람만도 못하기 때문에 서로 분해하고 있습니다.³⁵⁾

35) 『선조실록』, 27년 11월 12일 병술, 주역을 강하고 정철·이순신·원균 문제를 논의한 경연 기사 참조.

즉, 위 기사를 통해 이충무공은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주도면밀한 작전을 구사하였지만, 동시에 휘하 장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보상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수들의 경우 전공에 따른 합당한 관품·관직의 수여를 건의하고 실현시킴으로써, 부하들로부터 자발적인 신뢰와 충성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기록대로라면, 이미 그의 휘하 비장들의 상당수는 이미 선조 27년(1594)에 이르면 堂上官, 즉 折衝將軍의 품계를 획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시사적이라 할 만하다.

반면에, 원종2등공신인 ‘사복 이영남’과 같은 훈격으로 책훈된 주변 인물들은 대체로 개인적 전공에 따라 免賤 또는 許通의 혜택을 입은 인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 면면을 살펴보면 免賤 高毛乙論, 司僕 李奇, 主簿 姜男, 許通 朴忠國, 許通 金光連, 免賤 崔忠福 등으로, 그 직역이 免賤이나 許通 등으로 구성된 인물이 상당수인 것을 볼 때, 대체로 개별 軍功에 따른 책훈이었던 것으로 추론된다. 그런 측면에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충무공과 함께 순국한 가리포첨사 이영남은 정규 수군의 지휘자들과 같은 훈격에 해당하는 원종1등공신에 책훈된 ‘절충 이영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별반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Ⅲ. 請兵說 및 주요 관직 기록의 검토 및 재구성

1. 『懲毖錄』·『宣祖修正實錄』 請兵記錄의 사실성 문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영남장군과 관련된 대표적인 행적은 그가 고금도의 통제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가리포첨사로 재직하면서,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인 노량해전에서 이충무공과 더불어 장렬한 최후를 마친 대표적 장수의 하나였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앞서 살펴보았듯이 임진왜란 이후 그와 관련된 대표적인 행적으로 회자된 것은 순국 자체보다는 그가 원군의 비장으로 이충무공에게 지원 함대의 구성을 요청한 점, 이른바 ‘청병 사실’이었던 듯하다.

실제로 진천 출신의 이영남장군과 전주 출신의 이영남장군의 사적과 관련된 논쟁에서 후대에 공통적으로 인식된 사실은 다름 아닌 청병사실이었다는 점이 그 반증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이러한 역사인식의 형성 배경에는 임진왜란 이후 『징비록』의 세속적 성공이 작용한 결과에 힘입었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 이와 관련된 기록을 『宣祖修正實錄』을 통해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雲龍이 항거하여 말하기를, ‘사또가 나라의 중책을 맡았으니 의리상 관할 경내에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곳은 바로 兩湖의 요해처로서, 이곳을 잃게 되면 양호가 위태롭다. 지금 우리 군사가 흩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모을 수 있으며, 호남의 수군도 와서 구원하도록 청할 수 있

다.’ 하니, 원군이 그 계책을 따라 栗浦萬戶 李英男을 보내 순신에게 가서 청하게 하였다.³⁶⁾

위의 기록에 따르면, 이운룡이 제기하고 이영남이 수행한 원군의 전라좌수사 이순신에 대한 청병 행위는 실록의 修正을 통해 의식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진 사실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이 청병으로 인해 이충무공과 원군이 연합 함대를 구성하고, 연전연승을 통해 제해권을 장악함으로써 임진왜란 극복의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인식되었던 듯하다. 더욱이 그것이 임진왜란 당시 戰時 국정책임자인 영의정이자 도체찰사로서 전쟁을 총괄한 유성룡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더욱 일반화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이른바 請兵論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도 이렇듯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면 어찌서 처음부터 『선조실록』의 편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고, 『선조수정실록』을 편찬을 통해 사실로 인정받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 자칫 이 청병론의 의미를 확대 해석할 경우 사실 인식과 관련해서는 전혀 다른 해석도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아니라 청병론이 의미를 갖게 되면 그 주체는 어쨌든 원군 측이었다는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병에 따른 함대의 구성을 무비판적으로 ‘연합함대’로 부르는 것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상 당시 원군은 겨우 4척³⁷⁾의 배를 보유하여 척후 정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충무공의 입장에서는 청병을 받아들여 연합 함대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기대할만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즉, 말이 청병이지 실상은 일방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었다. 그런 까닭에서인지는 몰라도 청병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충무공의 亂中の 記錄 어디에서도 이 청병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청병론이 『징비록』이나 『선조수정실록』에서 특기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선조수정실록』이 仁祖反正의 성공에 따른 西南聯合政權期の 산물이라는 측면이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의 바탕 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청병 당시의 사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징비록』의 내용대로 원군이 왜군과 싸워보기도 전에 함선을 모두 水葬하였다거나 1만여의 군사를 해산시켰다거나 하는 기록은 사실과는 다른 것이었다. 이 점에서는 원군에게도 변명의 소지는 없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의 발발 가능성에 대한 조정의 의견이 상반되고 있던 상황에서 별반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부임 2개월 만에 대규모의 외침에 접한 원군의 초기 대응은 미숙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다만, 그가 왜적의 침입에 따른 전쟁의 진행상황을 사실상 최전방의 최고지휘관의 한 사람으로서 비교적 충실히 조정 및 주변 지휘관들에게 보고한 것은 남다른

36) 『宣祖修正實錄』권26, 25년 5월 1일 경신, 전라수군절도사 이순신의 거제해전 승전 기사.

37) 이민웅, 앞 책, p.74.

측면이었다.

즉, 그는 시시각각 진행되는 전쟁의 상황을 중앙조정은 물론 인근의 최고 지휘관인 병·수사 등의 방어사 및 순찰사 등에게 전달하고 있었음을 이충무공의 장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왕조의 수군 편제상 최대 규모를 구성하고 있던 경상우수영의 최고지휘자였던 원균은 전라좌수사에 이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海戰보다는 陸戰의 효과를 평가하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전쟁 발발 초기 일본 해군의 규모에 압도되었던 원균은 해전을 포기하고 육전에서 의 합동작전에 기대하는 입장을 더욱 분명히 갖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는 해전을 포기하고 육전을 기약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경상우수영 관할의 수군은 함대를 구성하기도 전에 스스로 해산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유성룡의 『징비록』에서는 결과 중심으로 소급되어 기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균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에 휘하의 모든 장수들이 동의하지는 않았다. 특히, 옥포만호 이운룡은 수군이 갖는 독자적 중요성을 설파하여, 원균으로 하여금 전라좌수영에 청병하자는 제안에 동의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 청병이 받아들여짐으로써 경상우수영의 지휘관들은 육전에 재 편제되지 않고, 현지에서 해전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뒤이어 統制使가 탄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일원적 지휘체계를 갖춰 전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결과만을 놓고 보자면, 통제사에 의한 일원적 지휘체계를 이루었던 하나의 계기로서 원균의 청병 사실이 주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것이 아닌 가 판단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윤두수를 필두로 하여 원균을 지지했던 서인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변명의 여지를 갖게 하는 좋은 소재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이영남의 청병 사실도 특기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후대의 인식과 더불어 『징비록』등에서는 그 청병 사실이 갖는 의미는, 적어도 임진왜란 초기 조선 수군의 연전연승 및 제해권 장악과 관련한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확대 해석하고 있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우선 『징비록』이나 『선조수정실록』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의 한 사람인 이순신의 임진왜란 기록인 『난중일기』·『임진장초』등에서는 이와 관련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임진장초』·『난중일기』등의 기록에서 수군의 연합 작전은 조정의 명령에 따른 것임이 확인된다. 그리고 사실 조선왕조시기에 일반적으로 구사한 기본 전략의 하나는 이른바 掎角之勢論이라 하여, 주변 아군과의 합동작전은 수행하는 것이 승리를 이끄는 지름길의 하나였다. 그리고 실제로 임진왜란 당시에 조정은 수군 상호간은 물론 육, 해군이 합동작전을 수행하도록 여러 차례 구상하고 독려하기도 하였음을 『임진장초』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운룡의 항언에 의해 이영남 장군이 이충무공에 대한 원균 측의 청병 사절의 역할을 수행한 것, 즉 청병 사실 자체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여러 기록을 교차시켜볼 때 그 의미를 확대 해석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청병 사

실에 주목하여 이영남장군의 행적을 조명하고자 한 후대의 역사인식은 임진왜란 당시의 역사적 사실과는 구별되는, 후대의 역사의식 반영에 따른 현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2. ‘栗浦萬戶 李英男’과 ‘所非浦權管 李英男’의 동일 인물 여부

— 청병 사절 이영남의 지위는 ‘栗浦權管’으로 보아야

이영남장군과 관련된 제반 행적 중에서 가장 의문스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원군의 비장인 종4품직의 栗浦萬戶로서 청병이라는 난제를 성사시킨 이후, 그의 지위가 오히려 종9품직의 所非浦權管으로 좌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두 사람을 별개의 인물로 본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동일 인물로 본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가 청병 사절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이충무공의 임진왜란 기록인 『난중일기』에도 그의 이름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을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런데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이영남의 직위는 한결같이 소비포권관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렇듯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던 까닭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우선 임진왜란 당시 울포진과 소비포진의 수군 편제상의 지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먼저, 울포보의 상황을 조선 전기의 종합적 지리서인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을 통해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栗浦堡 在縣東三十三里 有石城 周九百尺 高十三尺 內有一泉一溪 設權管以戍³⁸⁾

즉, 울포진은 鎭堡의 최하 단위인 權管 관할의 堡營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소비포진에 대해서도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所乙非浦戍 在縣西四十七里 石城周八百二十五尺 高十四尺 差權管戍之³⁹⁾

라고 하여, 소비포진 역시 권관 관할의 진보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두 진보의 지위는 임진왜란 당시에는 어떤 변화가 없었을까? 이와 관련하여 먼저 소비포진의 경우에는 당시 ‘權管 李英男’에 대한 기록이 『난중일기』라든가 『壬辰章草』등에서 아주 풍부히 발견된다는 점에서, 적어도 임진왜란 당시에도 소비포진은 權管營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栗浦堡의 사정은 어떠하였을까. 청병사절을 수행할 당시 이영남의 직위가 울포만 호였다고 한다면, 일정한 변화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울포보 역시 임진왜란 당

38) 『新增東國輿地勝覽』권32, 「慶尙道 巨濟縣」 關防.

39) 위의 책 권32, 「慶尙道 高城縣」 關防.

시의 수군 편제상의 지위는 權管營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들 수 있는 자료는 국가의 공식 기록의 하나인 『선조수정실록』의 진주성 1차 전투 기록에 등장하는 ‘栗浦權管 李纘宗’의 존재이다. 즉, 1592년 10월 5일~10일의 6일간에 걸쳐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던 제1차 진주성전투의 전공자의 한 사람으로 ‘울포권관 이찬중’의 이름이 보고되고 있었다.

먼저 관련 기록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상우도 감사 金誠一이 치계 하였다. 晉州의 성이 포위되었을 때에 힘써 將士들이 죽을 고비에서 벗어나 적을 물리치고 성을 안전하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제 서야 비로소 城池에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그 공이 지극히 큼니다...(중략). 栗浦權管 李纘宗은 적이 본 고을을 포위하려 할 때 사람들이 모두 ‘성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죽는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前虞候 李浹은 城門에 이르렀다가 도망하였지만, 그는 혼자 성으로 들어가 협력하여 南門을 지켰습니다.⁴⁰⁾

앞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통해 울포진은 권관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른바 청병을 수행한 이영남장군의 당시 지위는 울포만호로서 울포진이 권관보라는 사실과 합치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청병이라는 난제를 성사시킨 공로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위가 종4품직의 만호에서 종9품직의 권관으로 좌천되고 있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 따르면 뒤이어 울포보의 지휘자로 임명된 이찬중이란 인물의 지위는 다시 권관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영남은 예외적으로 만호 급의 지위로서 권관영인 울포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제기한 지위 좌천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뚜렷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른바 ‘請兵說’의 또 다른 당사자, 즉 청병의 제안자였던 玉浦萬戶 李雲龍의 문집, 즉 遺事集인 『食城君實記』의 발골이었다. 우선 먼저 관련 기록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元均이 화를 내며 말하기를, (그렇다면) 호남의 수군에 그대가 청병하러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다만 나는 이순신과 더불어 단지 한 번 함께 근무한 友誼가 있을 뿐이고, 栗浦權管 李英男이 본래부터 서로 친분이 있으므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이에 손수 서첩을 써서 이영남에게 붙여 떠나보냈다. 그러나 원균은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배에서 내리지 않고 남쪽으로 떠났다. (이에) 공은 홀로 영등포만호 禹致績과 더불어 거제로 들어가 현령 金俊民을 만나 세 사람이 서로 적을 토벌하기로 하늘에 맹세하고는, 바다로 내려와 견내랑에 이르러 援軍을 기다렸다. 다음날 원균이 과연 湖南軍과 더불어 모두 松密浦에 이르렀다. 대저 그 달아나던 길에 우연히 援軍을 만나 돌아온 것이었다.⁴¹⁾

40) 『선조수정실록』 권21, 26년 1월 22일 정축, 경상우도 감사 김성일이 진주성 싸움 등에 대해 보고한 장계.

41) 『息城君實記』 권2, 「墓誌銘并序」(李起陽 撰).

참고적으로 위의 자료 원문은 제시해보면, 아래의 【도 ⑧】 과 같다.



【도 ⑧】 : 『식성군실기』의 ‘울포권관 이영남’ 기록 부분 원문 사진

즉, 임진왜란 발발 초기에 전라좌수영에 원군을 청병할 것을 제기한 당사자인 이운룡의 유사집에서 청병 사절을 담당했던 ‘栗浦萬戶’로 알려진 이영남의 실제 지위를 ‘栗浦權管’으로 기록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이다. 특히, 일개 권관에 불과한 ‘울포권관 이영남’이 청병 사절로 선정될 수 있었던 까닭에 대해서도, “素相善 可遣也”, 즉 ‘평소에 친분이 있었으므로, 보낼 만하다’라고 하여, 이충무공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결과였음이 분명히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위의 세 가지 사실에 근거할 때 임진왜란 발발 당시 청병 사절의 역할을 수행한 이영남장군의 지위는 ‘울포만호’가 아니라 ‘울포권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울포권관에서 소비포권관으로의 이동이 단순히 수평 이동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⁴²⁾ 청병의 주체로 활동한 이영남에게도 일종의 상훈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생각해볼 만하다. 특히, 소비포진은 거제의 경상우수영과 순천의 전라좌수영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진보였다는 점에서 향후의 역할을 전망해볼 수 있는 자리 이동이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한편 청병 당시 이영남의 직위가 울포만호가 아니라 울포권관이었음이 밝혀짐으로써, 그의 생애 및 경력과 관련된 많은 의문도 동시에 해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2)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지만, 栗浦堡는 임진왜란 이전까지 권관영의 지위에 머무는데 반하여, 소비포진은 처음 설치되는 과정에서부터 사랑만호영을 대신하는 형태로 출발하는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된다. 우선, 종4품의 만호의 지위에 있던 인물이 ‘청병의 성공’이라는 뛰어난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종9품직의 권관으로 좌천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그러한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불가피하게, 율포만호와 소비포권관을 별개의 인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도⁴³⁾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게 된다.

3. 碣狀類 자료의 주요 관직 기록과 그 사실성 문제

① 栗浦權管 이전의 관직 경력과 그 사실성 문제

이영남장군의 문중 전승 갈장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율포만호, 즉 실제로는 율포권관으로 재임하기 이전에도 많은 관직을 역임하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1584년 급제와 더불어 宣傳官에 제수되었으며, 얼마 있지 않다가 종4품의 訓練院僉正으로 승진되고, 이어서 다음해에는 선전관을 겸한 泰安郡守로 발령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다시 종4품직인 오위도총부의 經歷職에 임명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3년 뒤인 1592년에는 경상우수사 원균에 의해 종4품직인 율포만호로 발탁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장류의 기록은 당시 관직 임용의 일반적 원칙과 관행을 고려해본다면, 그 인사행정은 너무 파격적인 측면이 개재된 것이라는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별시 무과의 제163위로 급제한 인물이 선전관에 곧바로 제수된다는 사실부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인 『經國大典』의 관련 규정을 조금만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인사행정은 파격 자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조선왕조에서 무관의 등용문인 무과의 式年試의 합격 정원은 28명으로 이들은 일단 訓練院·別侍衛의 기관에 임시직인 權知로 발령받은 다음 3년의 임기를 마치면 다시 별도의 추천을 거쳐 정식 관료로 出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별시무과에 제163위로 급제한 인물이 별다른 가문 배경이나 특별한 사정도 없이 무관의 淸華職인 선전관에 제수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상 아무런 경력도 없는 인물을 얼마 지나지 않아 훈련원의 실질적 실무책임자의 하나인 종4품직인 僉正에 임명된다는 기록이다. 이는 아마도 장원급제한 인물이나 왕족·공신의 자제라도 누리기 힘든 특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영남의 무과 응시 당시의 직역이 당시의 실정을 고려할 때 地方品官의 지위도 인정하기 힘든 ‘閑良’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사실성을 액면 그대로 받아드리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다.

43) 실제로 지금까지의 많은 논저에서 양자를 별개의 인물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해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그러면 이러한 착오가 왜 발생하였던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두·세 가지 정도의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그의 행장이 사후 15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작성되고 있던 사실을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아마도 행장이 작성될 즈음에는 그의 생몰연대나 관직 경력 등과 관련된 1차 자료, 즉 教旨라든가 功臣錄券 등의 어떤 자료도 전승되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전승 자료가 없던 상황에서 『징비록』이나 『왕조실록』등 참고할 만한 자료에서 이영남이라고 소개된 기록은 모두 무비관적으로 가리포첨사 이영남의 경력으로 수집하는 착오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에 이영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인물로는 선무원종2등공신에 녹훈된 ‘겸사복 이영남’이 있었듯이, 또 다른 이영남이 활동했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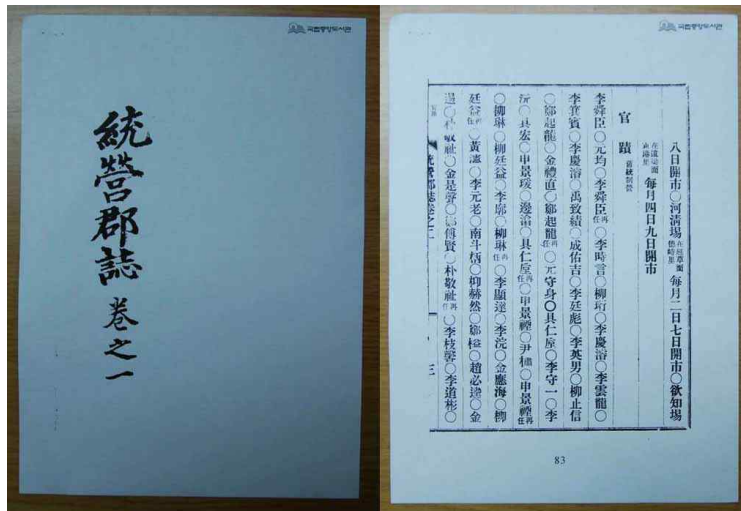
그런 측면에서 가리포첨사 이영남과 年輩 및 활동시기가 중복될 수 있는 인물을 조사해볼 필요성도 있겠는데, 그 시기는 대체로 명종~인조 년간으로 설정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 『왕조실록』 등을 중심으로 이 기간에 활약한 이영남이란 이름의 인물을 조사해본 결과 최소한 4명 이상의 이영남의 존재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추론된다.

먼저 앞서 『선무원종공신녹권』을 통해 확인된 사복 이영남을 비롯하여 ‘左斥候將兼前權管 이영남’⁴⁴⁾이 동시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이며, 醫官으로 韓興君 이영남⁴⁵⁾이 활동하기도 하였다. 특히, 동시기에 활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이영남 중에는 제13대 통제사를 지낸 이영남을 주목해볼 수 있다. 즉, 다음의 【도 9】에서 볼 수 있듯이 『統營郡誌』에 통제사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제13대 통제사로 이영남이란 인물이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재임 기간은 광해군 7년(1615) 10월~광해군 8년(1616) 2월인데, 교체 사유는 病死이었다고 한다.⁴⁶⁾

44) 『承政院日記』, 인조 5년 19일조 참조.

45) 위의 책, 인조 4년 윤6월 4일조 참조.

46) 朴永穆, 『統營郡史』 역사편, 통영군사편찬위원회. 1985, p.279.



【도 ⑨ : 『통영군지』의 통제사 관안 부분 원문 사진】

한편 참고로 제13대 이영남 통제사를 전후로 통제사의 명단을 살펴보면 제12대 통제사에 李廷彪, 제11대 통제사는 임진왜란 발발 당시 선전관으로 활약한 成佑吉, 제10대 통제사는 임진왜란 발발 당시 영등포만호이었던 禹致績, 그리고 제7대 통제사가 옥포만호 출신의 이운룡이었다. 그리고 다시 밑으로는 제14대 통제사는 柳止信, 제15대 통제사는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병사로 활약한 鄭起龍 등이었다. 즉, 제13대 통제사 이영남을 전후로 통제사에 임명된 인물들은 모두 임진왜란 당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가리포첨사 이영남장군의 주요 활동기인 임진왜란 기간에 同名異人으로 다수의 이영남이 활약하고 있었다. 특히, 제13대 통제사를 지낸 이영남은 그 주변 인물들의 관직 경력을 통해서 볼 때 가리포첨사 이영남장군보다 조금 앞서 활동한 인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영남장군과 관련된 각종 기록을 인용할 때는 이 인물과 서로 혼동될 소지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아마도 이영남장군도 노량해전에서 순국하지 않았더라면, 이들과 더불어 통제사의 반열에 올랐을 가능성도 나름대로 예견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돌아가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영남장군이 울포권관으로 재임하기 이전에 역임한 것으로 이해된 행장류의 각종 관직은 그 사실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행장류 자료에서 훈련원첨정을 지냈거나 태안군수에 임명되었다는 등의 기록은 임진왜란 발발 당시 그의 직위가 울포권관이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사실상 그 자체대로 납득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무과 출신의 일반적인 인사 관행을 고려하고, 이충무공과의 “素相善可遣也,” 즉 素識之間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울포권관 이전에는 이충무공과 연계된 군관직을 수행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중한 접근자세는 소비포권관 이후에 역임하는 관직, 특히 고위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② 所非浦權管 이후의 관직 경력과 그 사실성 여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영남장군이 소비포권관을 역임한 이후 가리포첨사로 노량해전에서 순국하기 이전까지 역임한 관직의 사실성 문제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갈장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에 이영남장군이 역임한 관직으로는 태안군수(종4품), 강계부판관(종5품), 장흥부사(종3품), 가리포첨사겸조방장 등이었다.

먼저 태안군수와 강계부판관의 재임 시실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한 군현의 책임자인 守令職, 그것도 縣令·縣監職이 아닌 郡守를 지낸 인물이 武官府의 보좌직인 강계부판관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인사 관행상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영남장군이 태안군수를 지냈다고 하는 1595년은 5월은 이충무공의 『난중일기』에 따르면 이해 4월까지는 소비포권관으로 재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⁴⁷⁾ 사실대로라면 너무 파격적인 인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태안군수의 역임 사실에 대해서는 액면 그대로 수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강계부판관을 지냈다는 기록은 나름대로의 사실성이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江界府誌』의 ‘선생안’에서 이영남이 판관으로 재직한 기간을 살펴보면, 1595년 7월~12월의 5개월간이었다. 그런데 이 기간의 『난중일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이영남이 강계부판관으로 재임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뒷받침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난중일기』 및 『임진장초』 등의 기록에 따르면 이영남 장군이 소비포권관으로 재임한 기간은 1592년 5월부터 1595년 4월까지 약 3년간이었다. 이 기간에 소비포권관 이영남과 관련된 이충무공의 기록은 65차례나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⁴⁸⁾ 그러나 이후에는 1596년 1월이나 가서야, 그것도 직접적인 언급이 아닌 친분이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올 뿐이다. 즉, 이 기간에 이영남은 이충무공의 주변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특히, 『난중일기』 1596년 1월의 기사, 즉 이영남과 가깝게 지낸 여인이 주변의 침탈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하겠다는 기사는 이영남이 당시에 이충무공의 주변에 있지 않았다는 확실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이영남장군이 다시 이충무공을 찾은 것은 1596년 5월 7일이었고, 이때부터 5월 12일까지 네 차례 더 이충무공을 방문하고 있다. 특히, 5월 9일에는 이영남과 황해도와 평안도의 일을 이야기했다는 기사가 등장한다. 즉, 이 시기에 이영남은 황해도와 평안도에서 활약하고 있던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로써 1595년 7월~12월의 기간동안 강계부판관을 역임하였을 가능성도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영남장군이 종9품직의 소비포권관에서 종5품직의 강계부판관으로 승진한 것도 일반적으로 보면 비교적 빠른 승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작용하

47) 『亂中日記』, 을미 4월 20일(노승석 번역, 『난중일기』, 동아일보사, 2005, p.256.).

48) 이영환, 앞 책, pp.147~150 참조.

였다고 생각된다. 우선 첫째로 이해 초부터 왜구에 이어 西賊, 즉 여진족이 침범할 것이라는 소문이 일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따라서 조정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충무공의 휘하 장수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염두 해볼 수 있다.

더욱이 이영남장군과는 素識之間의 친분이 있었으므로 그 배려도 특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사람은 지위와 연배의 차이를 패념치 않고, 밤을 새워가며 이야기하는 사이였다. 그런 측면에서 이충무공이 당시 소비포권관이었던 이영남장군에게 戰功을 통해 입신양명할 수 있는 기회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을 가능성을 예견해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강계부 관관에 이어서 통정대부에 오르고 종3품의 장흥부사에 임명된다는 기록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은 측면에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長興府誌』 ‘선생안’에 따르면 이영남부사의 재임기간은 1696년 12월에서 1697년 5월까지로 약 6개월간이며, 그 관품은 통정대부였다. 그런데 이 기록을 이영남장군의 경력으로 인정할 경우, 앞서 논의한 기본적인 사실과도 배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서 『선무원종공신록권』에 대한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순국 당시 이영남장군의 최종 관품은 절충장군이었다. 즉, 무관직으로서는 최고 관품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런데 가리포침사를 지내기 이전 그의 관품이 벌써 堂上文官職인 통정대부에 이르렀다면, 『선무원종공신록권』에서 그 직위는 절충장군이 아닌 다른 관품이 기재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영남장군의 최종 관품은 무관직 최고 단계인 절충장군이었던 사실이다.

다른 한편 이 장흥부사의 경력을 인정할 경우 또 다른 기록과 배치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다름 아니라 『징비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충무공을 모함하고 그 자리를 대신하여 통제사에 오른 원균은 부임과 동시에 이충무공이 정한 규정을 모두 변경하고 휘하의 장수를 모두 내쫓았는데, 특히 이영남장군을 미워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⁴⁹⁾ 그런데 장흥부사 이영남의 재임기간은 원균이 통제사로 있던 1597년 2월~8월로 약 3개월간이 중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부임과 더불어 이충무공 휘하의 모든 장수들을 내쫓고, 이영남장군을 특히 미워했다는 기록과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확인되는 셈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강계부관관을 역임한 이후 이영남장군이 재임한 관직은 울포만호가 아니었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앞서 『징비록』의 기록을 유추해볼 때, 원균이 통제사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영남장군은 이충무공의 휘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또 종5품직의 강계부관관을 마친 이후에 종4품직인 울포만호로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럽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의 유사한 사례로서는 그와 동방급제 관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이는 李汝恬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사랑만호로 있다가 수원독성장을 거쳐 가덕첨사로 다시 이충무공의 휘하로 복귀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추정을 하는 까닭은 이영남장군과 관련하여 가장 널리 인식되었던 관직은, 다름 아닌 울포만호였다고 여

49) 남만성 역, 『懲毖錄』, 현암사, 1970, p.251.

겨지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청병 사절의 역할을 수행했을 때의 관직이 울포권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는 울포만호로 알려졌던 것도 이 기간에 울포만호를 지낸 사실이 소급 적용된 결과가 아닌 가 추정해볼 만하다. 그리고 울포만호에 이어서 가리포첨사로 승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일반적 인사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순조로운 이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가리포첨사 이영남장군의 가계와 생애에 대해 갈장류 자료의 기록을 관련 1차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그 사실성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여 보았다. 논쟁의 두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새로이 발굴한 자료를 포함하여 現傳하는 자료를 근거로 할 때, 鎭川 지역의 논의에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새로이 밝혀낸 성과부터 정리해보면, 우선 이영남장군의 무과 급제년도인 1584년 文武別試의 방목 자료인 『만력십이년갑신추별시문무방목』을 발굴하여, 그의 생몰년 및 兩親 관련 사항을 바로잡았다. 즉, 문중 전승의 기왕의 행장류 자료에서 병인생(1566년)으로 인식하고 있던 출생년도를 계해생(1563년)으로 바로잡음으로써, 그의 향년도 33세에서 36세로 보정하였다. 그리고 12세 兩艱喪 기록의 문제점도 새로이 밝혀냈다. 이러한 성과에 따라 종전에 상당수의 관직 경력에서 재임시기가 불일치하는 문제점도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다음으로 이미 발굴된 자료인 『가리포진첨사선생안』과 『선무원종공신녹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과 자료비판을 통해 鎭川 출신의 가리포첨사 이영남장군과 관련된 사실성을 충분히 입증하여 보았다. 특히, 『가리포진첨사선생안』에 대해서는 자료비판과 ‘在鎭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선무원종공신녹권』에 대해서는 ‘折衝 李英男’과 동급 훈격의 인물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사실성을 논증하였다.

셋째로, 이영남장군의 관직 경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장류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을 통해 울포권관, 소비포권관, 강계부판관, 가리포첨사 등을 역임한 사실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울포만호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계부판관을 지낸 이후의 경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른바 請兵의 제안자였던 옥포만호 李雲龍의 유사집인 『식성군실기』를 발굴하여, 청병 당시 이영남장군의 직위가 栗浦權管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도 새로운 성과의 하나였다. 그리고 이 사실의 발굴을 통해 그의 관직 경력을 이해하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만력십이년갑신추별시문무방목』의 발굴과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성과였다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再構成한 李英男將軍의 年譜를 기왕의 갈장

류 자료와 대비하여 표의 형식으로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 ‘재구성 연보’와 ‘갈장류 연보’의 비교표】

연도 / 나이	재구성 연보	갈장류 연보
1563년(癸亥, 명종 18) 1세	출생년도 향년 36세(1563~1598)	* 1566년 병인생 * 향년 33세(1566~1598)
1577년(丁丑, 선조 10) 15세	具慶下(兩親 생존)	* 12세 兩艱喪(兩親 俱沒)
1584년(甲申, 선조 17) 22세	별시무과 병과(8.17) 제 163위로 급제 ★ 이충무공 휘하의 군관직	* 나이 : 19세 * 급제일 : 3월 * 선전관 * 훈련원첨정
1589년(己丑, 선조 22) 27세	수행(‘素相善可遣也’)	* 선전관 겸 태안군수 * 도총부경력
1592년(壬辰, 선조 25) 30세	울포권관(?~4월) 소비포권관 (5월~1595년 4월)	* 울포만호(?~4월) 소비포권관 (5월~1595년 4월)
1595년(戊戌, 선조 28) 33세	강계부판관(7월~12월)	강계부판관(7월~12월)
1596년(丙申, 선조 29) 34세	★ 울포만호(?~?)	* 장흥부사 (12월~1597년 5월)
1597년(丁酉, 선조 30) 35세		* 조방장 (8.3~1598년 2월)
1598년(戊戌, 선조 31) 36세	가리포첨사(?~순국) 노량해전에서 순국 (11월 19일)	가리포첨사(*3월~순국) 노량해전에서 순국 (11월 19일)
1605년(乙巳, 선조 38) 사후 7년	절충장군 선무원종 일등공신으로 녹훈	절충장군 선무원종 일등공신으로 녹훈

(★는 추정 가능, *는 착오 사실의 표기임)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을 적어본다면, 이영남장군의 사후 추숭사적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의 발굴이 쉽지 않아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한 사실이다. 문중 전승의 갈장류 자료에는 여러 단계에 걸친 추숭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 사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미비문제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였다. 또한 가계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아쉬움들에 대해서는 후일의 보완을 약속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